

■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[별표]

인증을 촉탁할 수 있는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(제5조제1항 관련)

전자문서등의 형식(확장자)
pdf 파일(pdf)
훈글 파일(hwp)
MS워드 파일(doc)
엑셀 파일(xls)
파워포인트 파일(ppt)
훈민정음 파일(gul)
텍스트 파일(txt)
각종 그림 파일 (jpg, bmp, gif, tif, tiff)
전자문서등의 용량
10메가바이트 이하